

# 확정급여형 재정검증결과 안내서

DGB Daegu Bank Retirement Pension



2023년 06월 01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안내서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 DGB Daegu Bank Retirement Pension

## □ 기본정보

회사명	(주)조양염직	사업자번호	503-81-28393	회사계좌번호	575-10-1*****
제도명	확정급여형(DB)	조회일자	2023-06-01		

## □ 일반현황

제도설정일	납입주기	법정 최소적립비율			결산년월	가입자 수	30일분 평균임금 합계
		설정전 <sup>1)</sup>	설정후 <sup>2)</sup>	전체 <sup>3)</sup>			
2012년11월05일	년납	100.00 %	100.00 %	100.00 %	2022년12월	53	176,336,819원

※ 적용명부 : 재정검증용 등록 명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연차)에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 3)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과 설정 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예상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 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

$$\text{산출식} = \frac{[\text{평균과거근로기간} \times \text{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text{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90 \text{ 또는 } 100\% \text{ 중 어느 하나})}{\text{가입기간 전체}}$$

## □ 납입현황

(해당기간 : 2022.01.01~2022.12.31, 단위 :원)

부담금 산정액	부담금 납입액	차액 <sup>4)</sup>
320,646,741	200,000,000	120,646,741

4) 해당 기간에 적용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액과 해당 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또는 초과액을 차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기초율<sup>5)</sup> 현황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2.25%	표준승급율	표준퇴직율	표준사망율

5) 기초율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준 및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임금상승률 및 퇴직률은 당해 사업장의 경험률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의 발표율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합병 및 분사는 제외)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 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 검증결과

최소적립금 산출		적립금 평가액 산출	
계속기준 금액 <sup>6)</sup>	1,510,329,912	원리금보장 <sup>9)</sup> 평가액	1,320,881,600
비계속기준 금액 <sup>7)</sup>	1,475,896,919	실적배당 <sup>10)</sup> 평가액	-
기준책임준비금	1,510,329,912	평가적립금 합계 <sup>11)</sup>	1,320,881,600
최소적립금 <sup>8)</sup>	1,510,329,912	적립비율 <sup>12)</sup>	87.45%
재정검증결과 <sup>13)</sup>	적립부족 II		

- 6)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7)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기간에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8)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의무적립비율(일반현황의 전체 법정 의무적립비율 값)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9) 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따른 평가금액입니다.
- 10) 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평가된 금액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후단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단위 : 원)

12개월간의 시가평균에 따른 평가금액	사업연도 말 시가에 따른 금액	최종 평가금액
-	-	-

- 11)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의 평가액과 실적배당 운용방식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1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평가적립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13) 최소적립금과 평가적립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여부를 표시합니다.

□ 조치사항

(단위 : 원)

결과구분	부족비율 <sup>14)</sup>	조치사항	참고
적립부족 II	12.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 대상임</li> <li>-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li> <li>○ 동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와 당 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하여야 함</li> </ul>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2년 12월 기준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4)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최소적립비율에서 적립비율을 뺀 값을 말합니다.

(주) 대구은행

## 재정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예시)

[사례1] 기준책임준비금×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sup>①</sup>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100%

결과구분	조치사항	참고
적정 I	해당없음	급여 전액지급(시행령 제8조제4호에 따른 전액 지급의 예외 사유가 아님)

[사례2] 최소적립금<sup>②</sup>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sup>①</sup>(60.70 또는 80% 중 하나)

결과구분c	조치사항	참고
적정 II	해당없음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급여 지급됨

[사례3] 기준책임준비금 × 100% < 평가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150%

결과구분	초과금액	조치사항
적립초과	-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 지급됨

[사례4] 기준책임준비금 × 150% < 평가적립금

결과구분	초과금액	조치사항	참고
적립초과	-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음	법 17조제2항에 따라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 지급됨
	-	사용자의 반환 요구 시 초과분을 반환할 수 있음	

[사례5] 최소적립금<sup>②</sup> × 95% ≤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

결과구분	조치사항	참고
적립부족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대상은 아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 시행령 제8조 제4호에 해당됨.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사례6] 평가적립금 < 최소적립금<sup>②</sup> × 95%

결과구분	부족비율 <sup>③</sup>	조치사항	참고
적립부족	12.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 대상임</li> <li>-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li> <li>○ 동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와 당 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하여야 함</li> </ul>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안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시까지 사외(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

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최소 적립비율(2021년까지는 100분의 90, 202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② 아래 산출식에 따른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에 기준책임준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산출식} = \frac{[(\text{평균과거근로기간} \times \text{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text{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90 \text{ 또는 } 100\% \text{ 중 어느 하나})]}{\text{가입기간 전체}}$$

\*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에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관한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소 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③ 부족금액은 최소적립금의 95% 금액에서 평가적립금을 뺀 금액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시 사용한 기초율 안내

### 1. 기초율(예상이율, 퇴직률, 임금상승률)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미래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 퇴직시점의 급여 등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확률 통계 값을 활용한 기초율(예상이율, 퇴직률, 임금상승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2 미래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기초율(예상이율, 퇴직률, 임금상승률)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근무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예측단위적립방식" 이라고 합니다.

### 귀사의 사업년도말 재정검증 시 사용한 기초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이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표준퇴직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귀사의 경우 200인 미만 사유로 인해서 현재 재직자, 퇴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산출된 경험률이 미래예측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임금상승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귀사의 경우 200인 미만 사유로 인해서 현재 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산출된 경험률이 미래예측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